

「南北離散家族 老父母訪問團 及 藝術團」交換 關聯

南北赤十字 實務代表接觸 結果報告(綜合)

1993. 8.

統 一 院
(南北會談事務局)

目 次

| | |
|--------------------------------------|----|
| 1. 第 1 次 實務代表接觸 結果報告('92.6. 5) | 3 |
| 2. 第 2 次 實務代表接觸 結果報告('92.6.12) | 19 |
| 3. 第 3 次 實務代表接觸 結果報告('92.6.22) | 33 |
| 4. 第 4 次 實務代表接觸 結果報告('92.7. 8) | 45 |
| 5. 第 5 次 實務代表接觸 結果報告('92.7.14) | 57 |
| 6. 第 6 次 實務代表接觸 結果報告('92.7.20) | 71 |
| 7. 第 7 次 實務代表接觸 結果報告('92.7.25) | 83 |
| 8. 第 8 次 實務代表接觸 結果報告('92.8. 7) | 93 |

第1次 實務代表接觸 結果報告

1992. 6. 5

1. 一般事項

가. 일 시 : 1992년 6월 5일 (금) 10:00 - 11:23

나. 장 소 : 관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다. 참석자

<우리측> 李 柄 雄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李 俊 求 (대한적십자사 회담운영위원)
李 正 勇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사업 자문위원)

<북 측> 박 영 수 (북한적십자회 중앙위 상임위원)
김 광 수 (북한적십자회 중앙위 위원)
신 원 철 (북한적십자회 중앙위 책임지도원)

* 수행원

<우리측> 김광호, 한수웅, 임용훈, 정태진, 우영표

<북 측> 윤운홍, 최수일, 홍설호

2. 接觸內容

가. 雙方 基調發言 要旨

0 우리측은 기초발언을 통해

- 노부모방문단중 단 한사람도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되돌아 오가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문희망자 명단을 상호 교환할 때 그 수를 방문단규모의 2 배수인 200 명으로 하여 빈틈없는 준비를 할 것과
- 방문단에 포함되어 있는 예술단원, 기자, 지원인원 중에 남북에 이산가족이 있는 사람들인 경우 이들에게도 상봉기회를 마련해 주고
- 상봉대상은 노부모를 위주로 하며 상봉방법은 합동상봉이나 개별상봉 뿐만 아니라 상봉당사자들이 합숙, 동행할 수도 있고 서울·평양 인근지역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정방문이나 성묘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의하면서
-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의 합의사항과 이를 기초로 한 『남북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방문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했음.

○ 한편 북측은 기본발언에서 노부모방문단 교환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한 바

- “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의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미 진행한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사업의 선례를 참작했다” 고 한 것과는 달리
- 방문단의 규모에 있어서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의 합의와는 달리 기자단을 40명으로, 지원인원을 30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 방문대상자 명단교환방식에 있어서도 제1차에 100 명으로 하고 상봉대상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추가로 30명의 명단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 방문대상자에 있어서 『상대측 지역에서 인명피해, 강도,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 들을 제외하며 명단통보양식에서도 『갈라지기 직전의 직장직위』를 밝히도록 하고
- 예술단 공연과 관련하여 포스터와 프로그램을 시내에 붙이고 관람자들에게 배포하자고 하는 등

향후 합의서안 타결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음.

나. 雙方 合意書案 比較

| 區 分 | 우 리 側 | 北 側 |
|---------------|--|--|
| 방문단 명 칭 | ◦ 남북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 ◦ 로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
| 방문단 규 모 | ◦ 인솔책임자 : 1명 노부모방문단 : 100명 예술단 : 70명 취재기자 : 30명 지원인원 : 40명 (총 241명) | ◦ 단장 : 적십자단체 부채 입자급 1명 노부모방문단 : 100명 예술단 : 70명 기 자 : 40명 보장성원 : 30명 (단장포함) (총 240명) |
| 방문단 구 성 | ◦ 노부모방문단은 50세 이상의 가족을 중심으로 편의에 따라 선발 구성 | ◦ 노부모방문단 성원은 50세이상의 북과 남에 고향을 둔 사람. *상대측 지역에서 인명피해, 강도,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 제외 |
| 방문단 교환방법 | ◦ 동시교환방문 | ◦ 동시교환방식 |
| 방문단 교환시기 및 기간 | ◦ 1992. 8. 18 - 8. 21 (3박 4 일) | ◦ 1992. 8. 25 - 8. 28 (3박 4 일) |
| 방문지 | ◦ 서울 · 평양 | ◦ 평양 · 서울 |

| 區 分 | 우 리 側 | 北 側 |
|--------------|--|---|
| 이산가족 상봉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어질 당시의 가족과 그후 출생한 가족을 우선 ◦ 친척의 경우 방계 8촌 처·외가 4촌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그밖의 친척도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어질 당시의 가족과 그들의 자녀 ◦ 친척의 경우 방계 8촌 처·외권 4촌 ◦ 그밖에 본인이 요구하는 친척 |
| 공연장소 및 회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 시설이 완비된 공연장 ◦ 회수 : 총 2 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 공연시설이 완비된 장소 ◦ 회수 : 4 회 |
| 공연내용 및 사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춤을 중심으로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내용 ◦ 사회자는 공연종목만 소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와 춤으로 함 ◦ 공연내용은 민족적이고 건전하며 상대측을 비방·중상하지 않는 것으로 함 ◦ 공연시 소개자는 상대측을 비방하지 않는 원칙에서 인사말과 함께 공연종목 내용을 소개 |
| 공연내용 중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측의 공연을 TV와 라디오로 실태중계 | |

| 區 分 | 우 리 側 | 北 側 |
|------------------|---|--|
| 공연프로그램 교환 및 사전답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프로그램은 방문 3 일전 상대측에 통보 ◦ 공연준비사항 사전점검을 위해 적십자인원 2 명·기술인원 3 명 공연장 사전답사 (1992. 8. 9 - 8. 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순서를 방문 5일전 상대측에 통보 *일방이 의견을 제기 할 경우 협의 ◦ 공연장소와 시설을 사전 요해하기 위해 적십자일꾼 2명, 전문일꾼 3 명으로 된 선발대를 상대측에 파견 (1992. 8. 16-8. 18) |
| 공연시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0분정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시간 30분 - 2시간 |
| 신변안전 보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 7일전 신변안전보장각서 상호교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당국의 안전담보성명 발표 및 그 문본을 방문단 교환 3 일 전 판문점연락대표부를 통해 교환 |
| 수송·통신 및 행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송은 초청측 차량이 용 ◦ 서울·평양간 행낭은 1 일 2 회 운용 ◦ 업무연락 및 기사송고를 위해 현재 가설되어 있는 남북직통전화 회선 이용 (필요시 쌍방 합의로 증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단의 숙식, 교통, 의료봉사 등 모든 편의는 초청측이 무료로 보장 ◦ 행낭은 매일 1 회 보장 ◦ 통신은 현재 쌍방 적십자단체사이에 가설되어 있는 직통전화 이용 |

| 區 分 | 우 리 側 | 北 側 |
|-------------------|---|--|
| 기자의 취재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부모 상봉 및 예술단 공연현장에 대한 취재활동을 보장하고 취재에 필요한 제반 편의 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자들의 취재 및 보도활동은 비방증상을 금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원칙으로 함 ◦ 예술단과 고향방문단 성원들의 활동에 대하여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 보장 |
| 통과장소 및 절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과지점은 판문점, 통과절차는 관례 준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단의 군사분계선 통과지점은 판문점, 통과절차는 제1차 방문단 교환 때와 같이 함 |
| 방문자 명단 통보시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부모방문단 명단과 예술단·취재기자·지원 인원중 이산가족명단은 방문 30일전 통보 * 노부모방문단의 명단은 후보자를 추가하여 순위가 부여된 200 명을 교환 ◦ 명단 접수측은 15일전 까지 상봉가능 대상자 명단을 회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단 교환 30일전 100 명의 노부모 명단 상대측에 통보 ◦ 방문단 교환 20일전 상대측 노부모방문단 성원들의 가족, 친척들을 찾은 정형을 상대측에 통보 ◦ 방문단 교환 19일전 1차로 명단을 교환한 노부모방문단 성원들 |

| 區 分 | 우 리 側 | 北 側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확정 명단은 방문 7 일전 상대측에 통보 | <p>가운데 가족, 친척들을 찾을 수 없는 대상이 있을 경우 추가로 노부모 30명 명단을 상대측에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명단에 대한 가족 친척들을 찾은 정형을 방문단 교환 15일전 상대측에 통보 ◦ 방문단교환 12일전 노부모방문단 최종명단을 상대측에 확정 통보 ◦ 예술단, 수원, 기자들의 명단은 방문 5 일전 판문점 연락대표부를 통해 상대측에 통보 *명단에는 성명, 성별, 방문단 직위를 밝히며 사진을 첨부 |
| 방문자 명단양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성별, 연령, 고향, 상봉대상자와의 관계를 기재하고 사진첨부 ◦ 상봉대상자란에는 상봉대상자의 성명, 성별, 연령, 고향, 헤어질 때를 기재하고 도움이 되는 자료를 첨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부모방문단 성원명단에는 성명, 성별, 연령, 출생지, 부모의 성명, 갈라지기 직전의 직장 직위 및 주소를 밝히고 사진첨부 ◦ 상봉대상에 대한 자료에는 성명, 성별, 연령, |

| 區 分 | 우 리 側 | 北 側 |
|-----------------|---|---|
| | | 출생지, 방문자와의 관계, 헤어질 당시의 주소와 직업을 밝히며 그밖에 필요한 내용을 첨부 |
| 방문자 표지 및 증명서 소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부모방문단, 예술단, 지원인원은 적십자 휘장에 자기측을 표시하는 내용의 표지 부착 ◦ 기자는 방문단 표지외에 기자완장을 착용, 기타사항은 남북적십자회답의 관례 준용 ◦ 방문자는 자기측 적십자사 총재(위원장)가 발행하는 신분증 소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단 성원들은 자기측 적십자 중앙기관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휴대하고 적십자 휘장 부착 ◦ 기자들은 그밖에 기자완장을 착용 |
| 상봉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동상봉과 개별상봉 방식으로 함 ◦ 상봉당사자는 방문기간 동안 합숙 및 동행할 수 있음 ◦ 상봉당사자의 희망에 따라 서울·평양 인근 지역에 한해 가정방문과 성묘를 할 수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봉은 가족, 친척단위로 제3자의 개입이 없이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도록 함 |

| 區 分 | 우 리 側 | 北 側 |
|------|--|---|
| 체류일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 실무대표 각 1명으로 방문 10 일전 협의 ◦ 방문 7일전 체류일정표 상호 교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류일정 협의는 방문 3 일전에 합 |
| 기타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측 지역 방문중에는 상대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름 ◦ 방문단 인원들에 대한 편의는 초청측이 제공 ◦ 공연무대에서 사전연습 편의 제공 ◦ 무대장치 보조인원 및 일반조명기구 제공 등 공연 관련 문제는 초청측이 편의 제공 ◦ 공연프로그램은 공연측이 공연장소에서 배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기간중 상대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름 ◦ 공연에 필요한 무대장치·기술기재·조명장치 등은 공연자측에서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상대측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음 ◦ 초청측은 공연자측의 요청에 따라 기술인원과 기타인원들의 노력적 방조를 제공 ◦ 예술공연에 대한 포스터·공연순서는 공연자측이 준비해 가지고 가서 시내에 붙이고 관람자들에게 배포 |

다. 討議內容

○ 북측은 기본발언에 이은 추가발언 형식을 통해

- 남북한 상호 핵사찰과 관련하여 최근 우리측이 취한 일련의 조치에 대해 “북남합의서의 이행 단계에 있는 남북관계의 좋은 추세에 역행하여 북남합의서 채택이전의 원점으로 돌려 세우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은 방문단 교환사업의 전도와 관련”되며,
- “미·일과 짜고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려 한다면 경우에 따라 돌이킬 수 없는 사태까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를 중지시키기 위해 적십자단체들이 각기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권한과 직분에 맞게 해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 이인모 송환문제와 관련해서 “이산가족의 상봉문제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하면서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응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

○ 우리측은 이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사업은 제7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거래 앞에 내놓은 첫 선물로서 결코 유산되어서는 안되며

— 어떤 전제조건 없이 꼭 실현되도록 쌍방이 노력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 금일 접촉에서는 쌍방간에 합의서안을 놓고 서로 합치하는 부분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하여 확인만 하고 다음 접촉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음.

※ 양측의 합의서 모두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의 합의 사항과 1985년 제1차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시의 합의서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차이점보다 합치 내지 유사한 부분이 많았음.

3. 分析·評價

○ 북측은 기본발언과는 별도의 추가발언을 통해 “노부모방문단 교환사업의 전도와 관련된 문제”라고 하면서 회담외적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쌍방이 제안한 합의서안을 토대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실질적 토의에 호응해 나왔음.

— 북측은 핵문제와 이인모 송환문제를 거론하고 이 문제에 대한 우리측 태도에 따라 “노부모방문단 교환사업도 유산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는 등 연계성 발언을 하였는 바

— 이것은 노부모방문단과 예술단 교환사업 이행 유보의 직접적 발언이라기 보다는 연형목 총리가 보낸 대남전통문 (6. 4) 내용을 다시 언급한 것임.

— 그러나 남북관계의 진전상황에 따라서는 이 문제들을 연계시킬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방문단 교환시기를 당초의 『8. 15 를 계기로 한다』는 약속과는 달리 8 월말로 늦춘 것도 남북한 상호핵사찰 및 각 분과위 회의의 진전상황에 따라 이를 연계시킬 수 있는 개연성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내용면에서는 북측이 방문대상자에서 『상대측 지역에서 인명피해, 강도,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제외한다고 하고, 명단통보양식에서 『갈라지기 직전의 직장직위』를 밝히도록 한 것은

— 북측이 우리측 방문대상자들에 대한 선별권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북측이 『적대세력』으로 판별하는 인원을 배제하려는 저의가 숨겨 있음.

○ 북측이 방문대상자 명단교환방식에서 1차로 100 명의 명단을 교환하고 이중 상봉할 수 없는 자가 발생할 시 추가로 30명을 교환하도록 제의한 것은

— 가능한 한 이산가족의 생사와 소재파악 결과통보의 폭을 좁히려는 의도가 있음.

※ 남북 쌍방은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시 양해각서를 통해 130 명정도의 방문후보자 명단을 교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예술단 공연과 관련하여 포스터와 공연프로그램을 시내에 붙이자고 한 것은

— 우리측의 운동권 학생들의 『국가보안법 무실화운동』과 연계시켜 보려는 의도일 가능성도 있음.

4. 차기접촉 일시 및 장소

○ 일시: 1992년 6월 12일(금) 10:00

○ 장소: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

第2次 實務代表接觸 結果報告

1992. 6. 12

1. 一般事項

가. 일 시 : 1992년 6월 12일 (금) 10:00 - 12:21

나. 장 소 :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다. 참석자

<우리측> 李 柄 雄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李 俊 求 (대한적십자사 회담운영위원)
李 正 勇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사업 자문위원)

<북 측> 박 영 수 (북한적십자회 중앙위 상임위원)
김 광 수 (북한적십자회 중앙위 위원)
신 원 철 (북한적십자회 중앙위 책임지도원)

* 수행원

<우리측> 김광호, 한수웅, 임용훈, 정태진, 우영표
<북 측> 윤운홍, 홍설호

2. 接觸內容

○ 우리측은 첫발언을 통해

- 노부모방문단 교환사업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사시키려는 의지만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임을 강조하고
- 오늘은 쌍방 합의서안을 중심으로 실무절차문제를 토의하여 상호 차이점을 좁혀갈 것을 제의했음.

○ 북측은 기본발언에서 핵문제와 관련한 최근의 남북관계, 이인모 송환문제 등을 집중 거론하였음.

- 『지난번 접촉에서 핵문제를 가지고 벌리고 있는 대결소동에 귀 적십자사가 응당한 주의를 돌리고 해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특별히 강조하였으나, 그 이후의 사태발전은 계속 악화되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것으로 하여 방문단 교환사업 앞에는 보다 엄중한 난관들이 조성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 이인모 문제는 『쌍방 적십자단체가 우선 관심을 두고 해결해야 할 가장 절박한 인도주의문제』라고 강조하면서 『보도에 의하면 귀 당국에서는 이인모 노인을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에 앞서 북반부로 돌려 보내기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한 만큼 『이 기회에 여기서 이인모 노인을 언제, 어떻게 송환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토의할 것을 제의』한다고 언급하는 한편

— 노부모방문단 교환문제에 대해서는 방문단 규모, 방문시기, 상봉방법, 방문단 명단교환 및 회보, 노부모방문단 이외의 예술단·기자·지원인원 등 구성원에 대한 상봉주선문제만 타결되면 된다는 입장을 표시했음.

○ 이에 대해 우리측은 『이 자리는 남북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교환에 따른 실무절차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자리이지 어느 특정 개인의 송환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모인 자리가 아니다』고 일축했음.

○ 이어 남북 쌍방은 노부모방문단 교환과 관련한 실무문제를 우리측 합의서안을 중심으로 하여 토의에 들어갔음.

《 討議內容 》

訪問團 構成問題

○ 우리측이 북측 합의서안중 방문단의 구성을 제7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의 양해각서와는 달리 기자를 40명, 지원인

원을 30명으로 한 이유를 묻자 북측은 종래의 우리측 주장을 미리 고려한 것이라고 변명

- 우리측이 인솔책임자 1명을 추가한데 대해 북측은 양해 각서에서의 합의사항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

※ 인솔책임자의 기준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쌍방 적십자사 부총재(부위원장)로 하기로 하고 북측은 부위원장 『級』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

訪問團・事前踏査班 交換日字問題

- 우리측은 숙박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1차 접촉시 우리측 제의대로 노부모방문단을 8월 18일부터 8월 21일(3박 4일)로 할 것을 중용하였으나 북측은 『8.15를 전후하여 행사가 많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여
- 북측案대로 사전답사반을 8월 16일부터 8월 18일(2박 3일)로, 노부모방문단을 8월 25일부터 8월 28일(3박 4일)로 하는데 쌍방 합의했음.

老父母訪問團 名單通報 및 回報問題

- 우리측은 여러차례 명단을 교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노부모방문단중 단 한사람도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되돌아 오가는 일이 없도록 빈틈없는 준비를 하기 위해 방문희망자 명단교환시 그 수를 방문단규모의 2 배수인 200 명으로 하자고 제의했음.

- 이에 대해 북측은
 - 상봉대상에 다른 친척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산가족을 찾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며,
 -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고,
 - 이산가족의 소재를 확인하고도 방문단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당사자에게도 좋지못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에 반대했음.

老父母訪問團에 特定對象 除外問題

- 북측은 노부모방문단 교환시 『상대측 지역에서 인명피해,

강도,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를 방문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 이에 대해 우리측은

- 설사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국가의 공소권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데 수십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것을 문제삼는 것은 옳지 않으며,
- 노부모방문단 교환사업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적절치 못하다는 이유를 들어 철회할 것을 종용했음.

※ 북측은 명문화할 수 없으면 구두로라도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

藝術團·記者·支援人員 離散家族相逢 周旋問題

- 우리측은 금번 노부모방문단의 의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방문단에 포함되어 있는 예술단원, 기자, 지원인원 중에 남북에 이산가족이 있는 사람들인 경우 이들에게도 상봉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을 제의했음.
- 북측은 만약 노부모방문단 외의 인원에 대해서 이들의 이산가족을 만나게 해줄 경우 『각자 맡은 일을 책임적

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대혼란이 조성될 것』이라고 반대하면서 이산가족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노부모방문단속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離散家族相逢 方式問題

○ 우리측은

- 합동상봉이나 개별상봉 뿐만 아니라 상봉당사자들이 동숙, 동행할 수도 있고 서울·평양 인근지역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정방문이나 성묘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의하고,
- 북측의 합의서안중 『제3자의 개입없이 가정적 분위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북측에 요구했음.

○ 이에 대해 북측은

- 아직도 남과 북사이에 대결과 불신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며,
- 구체적 절차는 선례대로 하기로 한 쌍방 합의서에 위반되고,

- 서울·평양 인근지역의 이산가족에게만 가정방문이나 성묘를 하게 해준다면 지방이 고향인 사람에 대해 차별하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면서
- 제3자의 개입없이 가정적 분위기에서 하자는 것이며, 실무적인 문제는 나중에 협의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

藝術團 公演回數問題

- 북측은 제1차 접촉에서 우리측이 제시한 2 회안과 북측이 제시한 4 회안을 절충하여 3 회안을 제시했으나, 우리측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일단 유보기로 함.

公演內容問題

- 우리측案인 『자극하지 않는 내용으로 한다』와 북측안인 『비방증상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를 놓고 토론했으나, 쌍방 각기 편의대로 표기하는데 합의했음.

其 他

- 방문단 교환기간중 행낭을 1 일 2 회 운용하자는 우리측의 제안에 대해 북측은 1 일 1 회 운용하자고 주장
- 공연프로그램 교환과 관련하여 북측안대로 방문 5 일전에 교환하되, 별도의 협의절차를 명기하지는 말자는 우리측 제의에 북측은 일방이 공연내용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경우 실무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을 『구두로 누르는 조건』에서 이에 동의
- 공연실황을 생중계하는데 쌍방 합의
- 방문자의 표지에 대해 북측은 우리측안중 『…자기측을 표시하는 내용의 표지 부착』을 삭제할 것을 주장, 우리측이 이를 수용
- 노부모방문단 명단회보서의 양식에 관해 북측은 『정형 통보서에는 방문자란에 상대측에서 보내온 명단번호와 이름만 밝히고, 찾은사람란에는 이름·성별·연령·출생지·방문자와의 관계·부모의 성명·갈라진 시기·헤어질 당시의 주소와 직업을 밝힌다』고 제의, 우리측은 북측안을 검토한 뒤 다음 접촉에서 논의하자고 했음.

3. 分析・評價

○ 금일 접촉에서도 북측은

- 1차접촉에 이어 또다시 핵문제와 이인모 송환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노부모방문단 교환사업과 연계시키려는 입장을 강하게 보였음.

※ 북측은 동 문제를 1차 접촉시에는 기본발언과는 별도의 추가발언을 통해서 제기했으나, 금일 접촉에서는 직접 기본발언에서 언급하는 한편 『사태진전에 따라 전도를 크게 우려』, 『엄중한 난관 조성』, 『노부모방문단 교환사업의 유산』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 강도를 한층 강화시켰음.

- 이러한 태도는 북측이 향후 각 분과위 회의의 진전과 전반적인 남북관계 정세를 관망하면서 노부모방문단 교환사업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북측이 제3차 접촉일자를 6월 22일로 제시한 것은 IAEA 정기이사회 (6.15 - 6.19)의 결과와 남북군사분과위 제5차회의 (6.19)에서의 우리측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임.

- 북한측은 상봉방법에 대해 상봉당사자들이 동숙·동행토록 하고, 서울·평양 인근지역의 경우 가정방문과 성묘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우리측 제의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였으며,
- 노부모방문단 교환사업의 근본취지와는 달리 상봉대상자를 합의서에 제시된 범위의 者이면 된다고 하는가 하면, 방문 대상자 명단통보 및 회보 대상의 수를 의식적으로 최소화하려는 입장을 취하는 등 교환사업 자체를 형식적으로 치루려는 자세를 노정시켰고,
- 신변안전보장각서문제와 관련하여 『전원 무사히 돌아가도록 담보』할 것을 합의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의 양해각서(기자 30명)와는 달리 기자의 수를 40명으로 늘림으로써 취재활동을 빙자하여 방문자를 감시·통제하려는 저의를 드러냈음.
- 북측은 『다음 접촉에서 이인모노인의 송환 방법 및 절차 문제를 토의하자』고 여러차례 강조한 것으로 보아 제3차 실무대표접촉에서는 이인모문제를 부각시키는 회의로 운영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4. 次期接觸日字 및 場所

○ 일 시 : 1992년 6월 22일 (월) 오전 10시

○ 장 소 : 관문점 증감위 회의실

第3次 實務代表接觸 結果報告

1992. 6. 22

1. 一般事項

가. 일 시 : 1992년 6월 22일 (월) 10:00 - 11:32 (非公開)

나. 장 소 :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다. 참석자

<우리측> 李 柄 雄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李 俊 求 (대한적십자사 회담운영위원)
李 正 勇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사업 자문위원)

<북 측> 박 영 수 (북한적십자회 중앙위 상임위원)
김 광 수 (북한적십자회 중앙위 위원)
신 원 철 (북한적십자회 중앙위 책임지도원)

* 수행원

<우리측> 김광호, 한수웅, 임용훈, 정태진, 우영표

<북 측> 윤운홍, 홍설호

2. 接觸內容

가. 雙方 첫發言 요지

- 우리측은 그간 쌍방간에 교환한 의견을 바탕으로 상호 합의사항과 이견사항을 재점검한 후 쌍방이 합의한 노부모방문단의 교환시기를 감안해 접촉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실무절차문제를 조속히 타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 하고,
- 지난 1, 2차 접촉에서의 토의사항을 토대로 하고 북측이 제시한 합의서 안도 감안하여 작성한 『남북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방문에 관한 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했음.
- 우리측이 제시한 수정안에서 중요한 문제로 재강조한 사항은

藝術團·記者·支援人員중 離散家族의 相逢周旋問題

- 노부모방문단 외에도 예술단, 기자, 지원인원중에 이산가족이 있는 경우 그들의 가족과 친척을 상봉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자고 제안한 것은 한사람이라도 더 이산의 고통을 해소해 주려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

- 북측이 이들에게 가족을 만나게 해줄 경우 각자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대혼란이 조성될 것이라고 반대하는 것은 그와는 반대로 오히려 훨씬 활기찬 속에서 성과적으로 자기 역할을 다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이유가 되지 못함을 지적
- 이들도 이산가족으로서의 한과 고통을 안고 있는데 지적에 혈육을 두고도 만나지 못한채 아픈 마음을 안고 되돌아 가게 하는 것은 적십자 인도주의정신에도 배치되는 것임을 환기

離散家族 相逢時 家庭訪問·省墓 등 許容問題

- 노부모방문단의 상봉을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그리고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자는 취지에서 우리측은 방문기간동안 상봉당사자가 희망할 경우 이들이 숙식을 같이 할 수 있고, 참관시 동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울·평양의 인근지역만이라도 가정방문과 성묘를 허용토록 하자고 제의한 것임을 설명
- 북측이 제시한 『제3자의 개입없는 가정적인 분위기』의 취지도 우리와 마찬가지로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

老父母訪問團 構成을 위한 事前 名單交換時 人員數問題

- 이번 방문단 교환의 근본취지가 명칭 그대로 노부모를 비롯한 가족과의 상봉 실현에 있는 만큼 노부모방문단은 가능한 한 노부모나 가족을 상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
 - 따라서 방문단중 단 한사람이라도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되돌아 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방문단 숫자를 넉넉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우리측은 200 명의 명단을 교환하자고 제의한 것임을 설명
 - 남과 북 어느 쪽도 방문자가 누구를 만나게 되든 그 숫자나 채우면 된다는 식의 자세를 가져서는 안될 것임을 환기
- 북측은 첫발언을 통하여 『최근 노부모방문단의 교환을 백지화시킬 수 있는 심상치 못한 사태가 조성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 1, 2차 접촉에서 『핵사찰문제와 관련한 반공화국소동을 계속할 경우 노부모방문단이 유산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적십자가 해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접촉이후 북남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파국으로 몰아가기 위한 도발적 책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 『6월 20일 당정회의』에서 우리측이 노부모방문단의 교환을 제외한 모든 합의사항의 이행을 유보하겠다고 한 것과 남북고위급회담 우리측 대변인이 핵사찰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부속합의서를 발효시키지 않겠다고 한 것은 가장 노골적인 도전행위라고 비난하고
- 노부모방문단의 교환도 쌍방 적십자의 발기가 아니라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의 여러 합의사항중 하나이므로, 다른 모든 사항을 유보하면서 노부모방문단 교환만 추진하겠다는 것은 『말같지도 않은 궤변』으로 우리측이 방문단 교환사업에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증거라고 주장했음.

○ 또한 실무절차문제 논의에 앞서 노부모방문단을 교환하겠는가? 교환하지 않겠는가?에 대한 우리 당국의 명백한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면서 『방문단의 실현전망이 없는 실정에서 실무문제를 협의하는 것은 이산가족의 간절한 마음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실무문제 토의를 거부하였음.

○ 한편 핵사찰문제와 관련하여서는

- 자기측은 IAEA사찰을 성실히 받았으며, 핵시설이 순전히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됨으로써 이미 해결된 문제이며,
- 핵사찰이 지연되고 있는 책임은 주한미군의 핵무기·핵기지에 대한 전면사찰을 거부하고 있는 우리측에 있고, 따라서 핵문제의 해결이 되지않는 한 다른 모든 합의사항이행을 유보하겠다고 한 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라고 주장했음.

나. 討議內容

○ 우리측은

- 당정회의의 내용과 대변인의 언급에 대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 노부모방문단의 교환에 대해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무조건 하자는 것이다』고 한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대변인 안병수의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시 기자회견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 본 실무대표접촉과는 무관한 문제로 장애를 조성할 것이 아니라 실무대표로서의 기본임무에 충실하여 노부모 방문단 교환을 위한 실무절차문제의 토의에 들어갈 것을 거듭 요구했음.

○ 그러나 북측은 『다음 접촉에서 핵문제와 남북간 합의서 이행문제를 결부시키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당국의 입장을 명백히 알려줄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 차기접촉 일자에 대해서도 북측은 『귀측 당국의 명백한 입장 표명이 없는 한 본 실무대표접촉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면서 차기접촉일자 결정을 거부하였음.

※ 북측은 『귀측 당국이 명백한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을 전제로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차기접촉 일자를 통보하자고 했음.

3. 分析·評價

○ 오늘 접촉에서 북측은 처음부터 실질적 진전을 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이 회담외적문제의 거론과 이의 논쟁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취했음.

- 북측은 오늘 회의를 비공개원칙과는 달리 공개로 할 것을 제의했음. (우리측 주장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
 - 기본발언에서도 방문단 교환에 따른 실무절차문제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언급에 그친채 핵사찰문제와 관련한 우리측 입장을 집중거론하는가 하면 토의과정에서도 핵문제 언급에 이어 이인모 송환절차 협의문제를 제기했음.
- 이러한 북측의 태도는 노부모방문단 교환과 관련한 실무절차문제가 몇가지 사항만을 타결하면 합의될 수 있는 단계에서 여타 남북대화의 진전 상황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타결시점을 조절하기 위한 의도일 가능성도 있음.
- 북측은 노부모방문단 교환사업을 각 분과위원회와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 등 전반적인 남북대화의 진전 상황과 연계시키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음.
- 북측은 방문단 교환사업이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의 당국간 합의에 따르는 것으로 다른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조건에서 이 사업만 하자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주장
 - 핵문제와 관련한 우리측 보도를 토대로 우리측이 방문단 사업의 실현에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상

황이 계속되면 방문단 사업은 유산될 수 밖에 없다』고 언급

- 또한 우리 당국이 이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을 하지 않는 한 실무접촉이 무의미하다고 주장
- 북측이 차기접촉 날짜와 관련하여 우리측 당국이 핵문제와 남북간 합의서 이행문제를 결부시킬 것인지에 대한 명백한 태도표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당국의 개입을 요구한 것은 노부모방문단 교환사업을 활용하여 우리측의 대북 핵압력을 완화시켜보려는 의도인 것으로 분석됨.
- 제2차 접촉시 북측이 이번 3차 접촉에서는 이인모의 송환방법과 절차문제를 토의하자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략히 언급하는데 그친 것은
 - 우리측의 『공정적 검토』 보도를 자의적으로 해석, 우리측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것은 송환분위기 조성에 오히려 이롭지 않다는 판단과
 - 오는 6월 26일로 예정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우리측의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第4次 實務代表接觸 結果報告

1992. 7. 8

1. 一般事項

가. 일 시 : 1992년 7월 8일 (화) 10:00 - 11:45 (非公開)

나. 장 소 :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다. 참석자

<우리측> 李 柄 雄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李 俊 求 (대한적십자사 회담운영위원)
李 正 勇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사업 자문위원)

<북 측> 박 영 수 (북한적십자회 중앙위 상임위원)
김 광 수 (북한적십자회 중앙위 위원)
신 원 철 (북한적십자회 중앙위 책임지도원)

* 수행원

<우리측> 김광호, 한수웅, 임용훈, 정태진, 우영표
<북 측> 윤운홍, 홍설호

2. 接觸內容

가. 雙方 첫發言 要旨

- 우리측은 인사발언에서 남북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교환사업은 결코 다른 문제와 연계될 수 없으며, 합의된 날짜에 무조건 실현되어야 함을 재강조하고,
 - 쌍방이 합의해 놓고 있는 방문단 교환일자까지는 50일도 채 남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면서,
 - 더이상 당국간의 정치문제나 회담외적문제가 제기되어 불필요한 논쟁으로 회의가 공전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 쌍방 모두 시일의 촉박성을 감안하여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시켜 나감으로써 늦어도 7월 15일까지는 모든 실무절차문제를 타결하여 합의서를 채택할 것을 촉구했음.
- 아울러 제3차 접촉시 우리측이 제시한 합의서 수정안을 토대로 오늘 접촉에서는 먼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항부터 협의하여 타결한 뒤 곧바로 합의서 문안정리에 들어갈 것을 제의했음.
- 북측은 첫발언을 통해 『반공화국 해소동』 문제, 『이인모

송환』 문제 등을 재론하고, 이에 대한 우리측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 미·일과 함께 벌이고 있는 『핵소동』은 『방문단교환도 유산시키려는 의사』로서, 『방문단교환은 의연히 엄청난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하고,
- 이인모의 송환문제에 대해 『정치적 흥정물로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적십자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서 『방문단 교환전에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적 입장이며, 불변의 입장』이라고 주장했음.

○ 또한 방문단 교환에 따른 실무문제와 관련하여 북측은,

- 방문자 명단교환시 그 인원수를 200 명으로 하자는 우리측 제의는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수정하려는 것』이고,
- 상봉시 가정방문과 성묘를 할 수 있게 하고, 예술단·기자·지원인원중 이산가족의 경우 상봉을 주선해주자는 제의도 『기타사항은 1985년 제1차 고향방문단 교환시의 선례를 준용토록 한 각서까지 교환한 이상 더는 의할 여지가 없다』고 거부입장을 표시하였으며,

- 노부모방문단에 『인명피해·강도·절도행위를 저지른 자』 제외 문제, 공연포스터의 시내부착문제 등 자기측 제의에 대해서는 『방문단교환을 순조롭게 성사시키려 하자면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음.

나. 討議內容

- 금일 접측은 북측이 소위『핵소동』문제와 『이인모송환』문제를 집중거론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실무절차문제는 토의해봐야 아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실무절차문제 토의는 사실상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음.

소위『핵소동』문제

- 우리측은 북측이 첫발언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 이미 해당 본과위원회에서 명백한 입장표명이 있었으며, 이 문제가 본 실무대표접측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강조하고 방문단 교환에 따른 실무절차문제 토의에 들어갈 것을 촉구하였음.
- 이에 대해 북측은 『이 문제에 대해 태도표시를 했다고 하지만 명확치 않고, 현실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계

속하기 때문에 누차 강조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귀당국이 핵문제를 가지고 지금과 같이 계속한다면 북남간 합의사항도 안되며, 방문단교환도 실현될 수 없다고 주장했음.

이인모송환문제

- 우리측은 7.7 국무총리 서한에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밝혔음을 지적하고, 북측이 수많은 이산가족문제를 외면한채 이인모문제만을 집중거론하는 것은 방문단 교환사업에 장애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음.
- 북측은 우리측 국무총리의 서한이 『이인모문제를 정치선전차원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불순한 기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노부모방문단 교환이전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음.
- 또한 북측은 실무절차 토의의 전제조건으로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사업의 원칙적 입장을 밝히는 북적 중앙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제시했음.

<내 용>

- ① 남측이 앞으로도 핵문제로 남북합의서 이행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반복소동을 벌인다면 방문단 실

무절차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방문단 사업이 유산될 수 있음.

② 이인모는 어떤 방법으로든 반드시 방문단 교환전에 송환되어야 하며, 이 문제의 해결이 없다면 방문단 사업이 유산될 수 있음.

③ 상기 원칙적 입장을 남측 당국과 적십자사에 정확히 전달하기 바람.

④ 앞으로도 남측 당국의 태도를 주시하겠음.

○ 우리측의 거듭된 촉구에 따라 쌍방은 형식적이거나 실무절차문제 토의에 들어가 노부모방문단의 사전 명단 교환시 그 인원수문제, 예술단·기자·지원인원 중 이산가족의 경우 상봉주선문제, 북측의 소위『기피인물 제외』주장, 기자의 취재활동원칙 등에 대해 토의했으나,

— 노부모방문단 사전 명단교환시 그 인원수문제와 예술단·기자·지원인원 중 이산가족의 경우 상봉주선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으며,

— 상봉방법과 관련하여 북측이 『1985년의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 방문시의 선례를 준용할

것』을 주장한데 대해, 우리측은 『그럴경우 1985년도의 선례에 따라 북측안중 기피인물의 방문단에서의 제외조항과 기자들의 취재·보도활동 원칙조항이 삭제되면 고려가능하다』는 입장을 표시했으나 북측이 『여타 세부 절차문제를 모두 1985년도 사업의 선례에 따를 수는 없다』고 맞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음.

- 회의를 종료하면서 북측은 차기접촉에서도 이인모문제 등을 거론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음.

3. 分析·評價

- 북측은 금일 접촉에서 핵문제와 관련한 우리측의 입장과 이인모송환문제를 방문단 교환의 전제조건화하는 명백한 태도를 취했음.
 - 지난 제3차 접촉시 『핵문제에 대한 귀측 당국의 명백한 입장 표시가 없는한 실무토의가 무의미하다』고 한 경고성 발언의 정도를 넘어서서 금일 접촉에서는 우리측이 『전제조건인가?』라고 물은데 대해 『그렇게 이해해도 좋다』고 발언했음.
 - 북적 중앙위의 『결정사항』이라고 하면서 실무접촉에 관

한 원칙적 입장으로서는 두 문제를 방문단 교환의 전제조건화한 4개항을 공식적으로 전달했음.

-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시 북측 안병수 대변인이 『아무런 전제조건이 없다』고 한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와는 정세가 변했다』는 이유로 이를 반복했음.

○ 핵문제와 관련하여 북측은 실무절차문제의 합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방문단 교환이 유산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는 바

- 우리측이 그간 교류·협력분과위 제5차회의 (6.26) , 핵통제공동위 제6차회의 (6.30) , 정치분과위 제6차회의 (7.2) 등을 통해 핵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을 명백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똑똑한 태도표시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 『남북간의 모든 합의는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과 『핵문제의 해결없이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측의 명백한 태도표시를 계속 요구했음.

- 이것은 우리측의 『핵문제의 해결없이 남북관계에 실질적인 진전은 없다』는 내용의 취소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임.

○ 이인모문제와 관련한 북측의 태도는 7.7 국무총리 대북서한에 대한 반응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바

- 『이인모 문제는 적십자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 『방문단 교환에 앞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측 서한 내용을 북측에 대한 『일종의 도발』로 『전도를 더욱 우려하게 되었다』고 발언했음.
- 이것은 북측이 이산가족 귀환·정착사업의 일환으로 이인모 문제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우리측 제의를 사실상 이인모 송환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받아들인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북측이 그러한 전제조건을 내걸고 회의를 회담외적문제에 대한 논쟁으로 일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말미에서 형식적으로나마 일부 합의서 내용에 대한 토의를 진행시킨 것은

- 그러한 전제조건으로 인해 방문단 교환사업이 완전 결렬되었다는 인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음.
- 그러나 이 합의서 내용 토의에서도 우리측이 제3차 접

측시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 『수정안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평가하는 등 사전 명단교환시 인원수, 상봉방법 등 주요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입장을 고수하려는 태도를 보였음.

- 금일 접촉을 전체적으로 평가해 볼 때 북한측은 현 시점에서 방문단 교환사업의 실현여부를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판단됨.
- 북측은 『핵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에 변화가 없고 앞으로도 변할 수 없다』고 하고,
- 이인모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원칙적이고 불변적 입장』임을 강조하면서 동 문제에 대한 우리측 당국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며 차기접촉시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명백한 태도를 취했음.

4. 차기접촉일자 및 장소

- 일 자 : 1992년 7월 14일(화) 오전 10시
- 장 소 :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第5次 實務代表接觸 結果報告

1992. 7. 14

1. 一般事項

가. 일 시 : 1992년 7월 14일 (화) 10:00 - 12:20 (非公開)

나. 장 소 :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다. 참석자

<우리측> 李 柄 雄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李 俊 求 (대한적십자사 회담운영위원)
李 正 勇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사업 자문위원)

<북 측> 박 영 수 (북한적십자회 중앙위 상임위원)
김 광 수 (북한적십자회 중앙위 위원)
신 원 철 (북한적십자회 중앙위 책임지도원)

* 수행원

<우리측> 김광호, 한수웅, 임용훈, 정태진, 우영표

<북 측> 윤운홍, 홍실호

2. 接觸內容

가. 雙方 첫發言 要旨

- 우리측은 기초발언에서 북측이 접촉을 거듭할수록 『핵문제』와 『이인모문제』를 걸어 방문단 교환에 따른 실무 절차문제 토의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더욱 더 노골화해왔으며, 심지어 지난 제4차 접촉에서는 이들 문제가 방문단 교환의 전제조건이라고까지 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 『핵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핵통제공동위원회, 남북정치분과위원회 등에서 우리측 입장을 거듭 분명히 밝혔으며, 특히 7월 10일에 개최된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위원장접촉에서 핵문제의 해결이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했으므로 이제 더이상 논의할 필요조차도 없으며,
 - 『이인모문제』는 북측도 동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국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로서, 우리측이 지난 7월 7일자 국무총리 서한을 통해 이산가족문제와는 비록 성격을 달리하지만 타의에 의해 강제로 억류된 특정 이산가족들에 대한 귀환·정착사업의 일환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한 바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더이상 회담외적문제를 제기하여 실무절차문제 타결에 장애를 조성하지 말고 실무대표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이산가족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에 따른 실무절차문제 토의에만 집중할 것을 촉구했음.

○ 또한 방문단 교환과 관련한 실무절차문제의 조속한 타결을 위하여 남북간의 주요 이견사항에 대한 우리측의 수정안을 제시했음.

- 우리측 案중 예술단·기자·지원인원 중 이산가족이 있을 경우 상봉을 주선하는 문제, 노부모방문단의 상봉방법에 있어서 상봉당사자가 희망할경우 가정방문과 성묘를 허용하는 문제는 북측의 완강한 거부입장을 고려하여 양보
- 노부모방문단 선발을 위한 사전 명단교환시 그 인원수 문제에 대해서는 금번 방문단 교환의 근본취지가 노부모를 비롯한 가족과의 상봉에 있는 만큼 노부모나 가족을 상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방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사전 명단교환시 그 인원수를 200 명으로 하는데 동의할 것을 북측에 촉구
- 북측案 중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구성시 『상대측 지역에서 인명피해, 강도,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른 자』를

제외하는 문제, 기자들의 취재활동에 대해 『비방중상 금지의 민족적 회해와 단합을 도모하는 원칙』을 설정하는 문제, 예술단의 공연포스터를 시내에 부착하는 문제 등을 철회할 것을 중용

○ 북측은 첫발언을 통해 아직도 타결되지 않은 실무절차문제가 적지않게 남아있고 『핵문제』, 『이인모문제』 등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에 대해 만족할만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방문단 교환 일자가 조정되거나 유산될 기로에 있다』고 언급하고

— 특히 이인모송환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흥정물로 될 수 없다』고 하면서, 『반드시 방문단 교환이전에 송환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실무절차문제가 타결되어도 방문단교환은 성사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하였음.

※ 핵문제에 대해서도 『핵사찰을 걸어 남북관계를 지연시키지 말고 납득할 수 있는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

○ 또한 방문단 교환에 따른 실무절차문제와 관련하여 북측은,

- 방문자 사전 명단교환시 그 인원수를 200 명으로 하자는 우리측 제의는 『방문단 교환에 난관을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책략』 이고,
- 노부모방문단에 『상대측 지역에서 인명피해·강도·절도 행위를 저지른 자』를 제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 피해자가 있는 지역에 가해자를 보낼 경우 복잡한 후과를 남기고, 대결고취에 악용될 수 있다』고 강변하면서,
- 기자의 취재원칙 설정문제에 대해서는 『방문단 교환사업을 주관하는 적십자사가 기자들에게 보도활동의 원칙을 정해줄 수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주장했음.

나. 討議內容

- 금일 접촉에서도 북측은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교환에 따른 실무절차문제에 대해서는 첫발언에서 원칙적 입장만을 언급했을 뿐 토의과정에서는 『핵문제』와 『이인모문제』를 집중거론하는 자세를 보였음.
- 핵문제는 당국간에 이미 해결되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우리측 주장에 대해 『왜 취소발표가 없는가?』, 『핵문제의 해결이 없는 한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이 있을 수 없다고 한 말을 취소한다는 것인가?』하고 반문했음.

- 이인모문제에 대해 『이인모송환문제와 노부모방문단의 교환은 따로 떼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며, 통일적 과정으로 동시해결되어야만 한다』고 하면서, 『노부모방문단 교환이전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했음.
- 우리측이 『핵문제나 이인모문제는 이제 더이상 언급하지 말고 방문단 교환 실무절차문제를 토의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이를 계속 거론함에 따라 우리측은 이인모문제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음.
 - 북측이 이인모문제가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교환의 전제조건이라고까지 주장하고 나선 것은 1천만 이산가족은 물론 7천만 온 겨레를 우롱하는 처사임.
 - 이인모 문제는 본 실무대표접촉에서 논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응당 남북 쌍방 당국간에 제기되어야 할 문제임.

* 북측이 당국간 회담을 통해서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임을 지적

- 국무총리의 7.7 대북서한에서 이인모문제도 특정 이산가족의 귀환·정착사업의 대상으로 포함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밝힌만큼 북측이 이 문제의 해결을 원한다면 우리측 제의를 받아들이면 될 것임.

- 이인모는 민족분단과 동족상잔으로 혈육과 헤어진 이산가족과 동일선상에서 논의될 수 없으며,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희생자도 아님.

- 북측이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합의서 7개항중 다른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방문단교환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북측의 부당한 전제조건으로 방문단 교환문제가 교착되고 있는 것 이외에는 여타 6개항 모두 이미 이행을 완료했거나 진행중에 있음.

* 북측의 합의서 위반행위가 쌍방의 장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 심사숙고할 것을 촉구

-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교환사업은 반드시 합의된 날짜에 이행되어야 하며 어떠한 전제조건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측의 확고한 입장임.

— 북측이 전제조건을 철회하고 방문단교환에 따른 제반 실무절차문제를 타결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선전에 매달려 방문단교환을 무산시킴으로써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의 합의사항을 파기할 것인지에 대해 명백한 대답을 요구함.

○ 이러한 우리측의 확고한 입장전달에 대해 북측은 『도발적인 성명』, 『접촉결렬 선언』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지난 제4차 접촉시 제시했던 『적십자회 중앙위 결정사항』을 거듭 주장한 후 형식적이거나 실무절차문제 토의에 응해 왔음.

사건명단 교환시 인원수 문제

- 우리측은 방문단교환 취지에 맞게 노부모방문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200 명으로 할 것을 거듭 주장
- 북측은 양해각서에 명시된 대로 130 명으로 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를 수용한다면 몇가지 문제는 조절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

『범죄자 제외』 문제

- 우리측은 실무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화해와 단합에 바람직하지 않음을 들어 1985년도 고향방

문단 교환시 선례대로 삭제할 것을 북측에 요구

- 북측은 1985년도 고향방문단 교환시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구두로라도 합의할 것을 주장

기자취재활동 원칙문제

- 우리측은 1985년도 고향방문단 교환시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
- 북측은 우리측이 취재활동 원칙을 삭제하자고 하는 것은 비방·중상 보도를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면서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주장

기 타

- 상봉방법 문제에 대해 우리측이 가정방문과 성묘문제를 양보했다고 하자, 북측은 1985년도 고향방문단 교환시의 전례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라고 언급

※ 오늘 접촉에서 방문단 교환과 관련한 실무절차문제에 대하여 합의된 사항은 없음.

- 접촉 종료시 북측은 『중앙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불변의 입장』이라고 강조하면서 『방문단 교환의 전도가 위태롭

다는 점을 당국에 분명히 전달하고 긍정적 답변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3. 分析·評價

- 금일 접촉에서도 북측은 제4차 접촉시 언급한 소위 『중앙위원회 결정사항』 4개항에 입각해서 이를 계속 견지하는 입장에서 접촉을 운영하려는 태도로 나왔음.
 - 『핵문제』, 『이인모문제』를 전제조건으로 들고 나왔으며
 - 특히 이인모문제에 대해서는 『이인모문제와 노부모방문단 교환문제는 함께 합의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이 두문제를 별도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으며 동시에 해결될 문제』라는 명백한 입장을 취했음.
-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의 교환시기와 관련하여 북측은,
 - 『어떤 방법으로든 방문단 교환전에 이인모노인은 송환되어야 하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방문단 교환이 예정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언급했으며,
 - 우리측이 실무절차문제중 이견사항에 대한 일괄타결을 제의한데 대해 북측도 절충가능성을 비치면서도 의도적으로

오늘 접촉에서 마무리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 『금일 접촉이 고비』라고 하면서 『두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합의된 날짜를 조정하든가, 방문단 교환사업 자체가 유산되든가 2가지중 하나』라고 주장함으로써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교환을 쌍방이 합의한 날짜이후로 연기할 가능성을 시사했음.

- 북측이 『핵문제』와 『이인모문제』가 방문단 교환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이 확고한 원칙적 입장이라고 하면서도 실무절차문제 토의에 일단 호응해 나온 것은

-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의 교환이 연기되거나 유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그로부터 초래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임.

- 실무절차문제 토의에서 북측은 『범죄자 제외문제』, 『기자의 취재활동 원칙문제』를 계속 고수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귀측이 사전명단 교환 인원수를 130 명으로 할 경우 몇가지 문제는 조정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타결가능성을 보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자 제외문제』를 최소한 구두로라도 합의하자고 했는 바, 이는 방문단 교환이 성사될 경우 1985년 전례와 같이 배척권을 확보하려는 의도임.

○ 이인모문제와 관련한 우리측 발언에 대해 『도발적 성명』, 『일종의 접촉결렬 선언』이라고 평가하고, 『다음 접촉이 마지막 접촉이 될 것』이라고 한 점으로 보아

- 북측은 제6차 접촉에서 『이인모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된 방문단 교환일자에 노부모방문단 교환을 추진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방문단 교환을 연기시킬 가능성도 있음.

4. 次期接觸日字 및 場所

○ 일 자 : 1992년 7월 20일(월) 오전 10시

○ 장 소 :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第6次 實務代表接觸 結果報告

1992. 7. 20

1. 一般事項

가. 일 시 : 1992년 7월 20일 (월) 10:00 - 12:08 (非公開)

나. 장 소 :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다. 참석자

<우리측> 李 柄 雄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李 俊 求 (대한적십자사 회담운영위원)
李 正 勇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사업 자문위원)

<북 측> 박 영 수 (북한적십자회 중앙위 상임위원)
김 광 수 (북한적십자회 중앙위 위원)
신 원 철 (북한적십자회 중앙위 책임지도원)

* 수행원

<우리측> 김광호, 한수웅, 임용훈, 정태진, 우영표

<북 측> 윤운홍, 홍실호

2. 接觸內容

가. 雙方 첫發言 要旨

- 우리측은 첫발언에서 방문단 교환날짜를 거슬러 계산해 볼 때 실무절차문제의 타결이 이제 더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될 시점에 와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 오늘 접촉은 방문단 교환과 관련한 모든 실무절차문제를 타결짓고 합의서 작성까지 끝내야 함을 강조하면서,
 - 상호 이견을 보이고 있는 몇가지 실무절차문제들에 대해서는 방문단 교환일정의 촉박성을 감안하여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의 합의사항과 1985년 고향방문단 교환시의 선례를 기준으로 일괄타결시켜 나갈 것을 제의했음.
- 또한 남북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의 교환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합의된 날짜에 반드시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 만약 북측이 『핵문제』, 『이인모문제』 등 회담외적문제들을 철회하지 않고 끝내 고집함으로써 방문단 교환이 무산된다면 1천만 이산가족의 한결같은 여망을 저버리

는 비인도적 처사로서 내외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며,

- 또한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의 합의사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실천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상호불신을 청산하고 신뢰를 조성하는 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임을 경고했음.

○ 북측은 금일 첫발언에서도 『핵문제』, 『이인모문제』를 계속 거론하였을 뿐만 아니라, 『포커스텐즈혼련』 ('92. 8. 19- 30) 문제를 새롭게 들고나와 이를 방문단 교환과 연계시키는 태도를 보였음.

- 『핵문제』와 관련하여 『노부모방문단 교환은 북남합의서 이행의 특례사업인 만큼 반드시 다른 합의사항들과 관련하여 통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귀측 당국이 핵사찰문제가 해결되지않는 한 북남간의 합의사항 이행을 차단하겠다는 것을 여전히 명백히 한 것은 방문단 교환 앞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로 이에 대해 『귀 적십자가 응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라고 주장했음.

- 특히 이인모송환문제와 관련해서는 『귀측이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송환해주겠다고 해서 귀측의 요구대로 노부

모방문단 교환을 제의했던 것』이라고 하면서, 『이인모 송환문제는 신의의 문제이며, 방문단 교환의 전도와 관련된 초미의 문제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이를 잘못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포커스렌즈혼련』과 관련해서는 『방문단 교환시기에 이러한 혼련을 하는 것은 방문단 교환만은 실현시키겠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었던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화약내 풍기는 전쟁연습을 하고 있는 곳에 방문단을 내보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음.

○ 또한 방문단 교환 실무절차문제와 관련하여 복측은,

- 방문자 사전 명단교환 인원수를 130 명으로 하는 조건에서 방문단 총규모를 241 명으로 하고, 예술단의 공연 횟수를 2 회, 행낭운용을 1 일 2 회로 한다
- 노부모방문단에 『상대측 지역에서 인명피해·강도·절도 등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를 제외하는 문제, 기자의 취재원칙 설정문제, 공연포스터 시내부착문제 등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하여 해결한다

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음.

나. 討議內容

- 우리측은 『핵문제』나 『이인모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측의 입장을 이미 명백히 밝혔으며, 『포커스렌즈혼련』은 연례적인 혼련으로 방문단 교환문제와는 무관한 만큼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방문단 교환 실무절차문제를 토의할 것을 촉구했음.
 - 이에 대해 북측은 『핵문제』와 『이인모문제』에 대한 종래의 주장을 계속 견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포커스렌즈혼련』에 대해 『방문단 교환에 계속 난관을 조성하는 의도를 알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일단 실무절차문제 토의에 들어갔음.
 - 실무절차문제에 대한 토의에서 쌍방은 상호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항부터 토의를 진행하였는 바,
 - 노부모방문단에 『상대측 지역에서 인명피해·강도·질도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를 제외하는 문제, 기자의 취재원칙 설정문제, 공언포스터 시내부착문제 등은 계속 이견을 보임으로써 차기접촉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음.
- ※ 우리측은 북측이 이들 문제에 대한 주장을 철회함으로써 실무절차문제를 일괄타결할 것을 종용했으나, 북측은 『좀 더 논의해서 해결하자』고 유보

『범죄자 제외』 문제

- 우리측은 실무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미스러운 일을 합의서에 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들어 이를 삭제하고 1985년도 고향방문단 교환시 선례대로 할 것을 촉구

* 문제가 있는 경우 방문단 교환단계에서 실무접촉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는 입장 피력

- 북측은 1985년도 고향방문단 교환시 방문단 교환단계에서 범죄자를 제외한 선례가 있음을 들어 합의서에 명기할 것을 계속 주장

기자의 취재원칙 설정문제

- 우리측은 체제의 특성상 기자들의 취재활동을 규제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기자들의 보도내용이 시비거리가 될 경우 오히려 복잡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1985년도 고향방문단 교환시의 선례대로 할 것』을 강조

* 단, 기자들에게 권고는 할 수 있다고 언급

- 북측은 『1985년도 고향방문단 교환시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면서, 『기본합의서에서도 합의한 비방·중상 중지를 합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

공연포스터 시내부착문제

- 우리측은 포스터를 부착하기로 할 경우 부착장소 결정 등 복잡한 실무적 문제가 제기되므로 이 문제를 삭제하고 1985년도 고향방문단 교환시의 선례대로 하되, 공연장내 부착에 대해서는 양해할 의사를 표시
 - 북측은 『이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면서 부착장소 결정 등 실무적 문제는 어렵지 않다고 주장
- 접촉 말미에서 북측은 『포커스렌즈훈련』이 중지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였음.

3. 分析・評價

- 금일 접촉에서도 북측은 『핵문제』, 『이인모송환문제』를 방문단 교환의 전제조건으로 계속 들고 나왔으며, 실무절차 문제 토의에 있어서도 의도적으로 타결을 유보시키려는 태도를 보였음.
 - 『핵문제』, 『이인모송환문제』를 전제조건으로 견지하는 외에 『포커스렌즈 혼련기간동안 노부모방문단을 내보낼 수 없다』고 함으로써 『포커스렌즈혼련』을 또 하나의 전제조건으로 추가했음.
 - 특히 이인모문제에 대해서는 『쌍방 사이에 송환이 기정 사실화된 문제』라고 강변하면서 『이인모를 송환치 않는 것은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하였음.
- 이같은 태도와 함께 북측이 다음 접촉일자를 7월 25일로 고집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북측은 김달현의 서울방문을 계기로 『핵문제』와 『이인모송환문제』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켜본 뒤 방문단 교환에 대한 태도를 확정지으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임.

○ 북측은 노부모방문단 교환사업이 연기 또는 유산될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측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려는 입장에서 금일 접촉을 운영하였음.

— 북측이 『절차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노부모방문단에서 범죄자 제외문제』, 『기자의 취재원칙 설정문제』, 『예술단 공연포스터 시내부착문제』 등의 쟁점 사항을 굳이 『좀 더 논의해서 해결하자』고 하면서 미합의사항으로 남겼음.

— 『핵문제』, 『이인모송환문제』를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교환의 연기 또는 유산의 전제조건으로 하기에는 명분이 약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포커스렌즈훈련』문제를 새로이 제기하여 이를 보강하려는 입장을 보였음.

○ 다음 접촉에서 북측은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을 합의된 날짜에 교환할 것인가, 아니면 사실상 연기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임.

— 오늘 접촉의 말미에서 북측은 『다음 접촉이야말로 정말 마지막 접촉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날짜조정을 하는가 아니면 방문단 교환이 깨지겠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언급

※ 따라서 차기접촉에서는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교환일자를 연기하든가, 아니면 사전 명단교환 일자를 조정하든가 할 수 밖에 없게 되어있음.

4. 次期接觸日字 및 場所

○ 일 시 : 1992년 7월 25일(토) 10:00

○ 장 소 : 판문점·중감위회의실

第7次 實務代表接觸 結果報告

1992. 7. 25

1. 一般事項

가. 일 시 : 1992년 7월 25일 (토) 10:00 - 12:40 (非公開)

나. 장 소 : 관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다. 참석자

<우리측> 李 柄 雄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李 俊 求 (대한적십자사 회담운영위원)
李 正 勇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사업 자문위원)

<북 측> 박 영 수 (북한적십자회 중앙위 상임위원)
김 광 수 (북한적십자회 중앙위 위원)
신 원 철 (북한적십자회 중앙위 책임지도원)

* 수행원

<우리측> 김광호, 한수웅, 임용훈, 정태진, 우영표

<북 측> 윤운홍, 홍실호

2. 接觸內容

가. 雙方 첫發言 要旨

- 금일 접촉은 북측의 선발언으로 시작되었는 바, 북측은 첫발언에서 『핵문제』, 『이인모문제』 및 『포커스렌즈혼련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이들 문제를 방문단 교환과 연계시키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하였음.
- 『핵문제』와 관련하여 『제6차 접촉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핵문제의 해결이 합의서의 이행과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을 요구했음.
- 『이인모송환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인모송환문제와 방문단 교환문제는 쌍방사이에 통일적으로 실현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하면서, 『절대로 별개의 문제가 아니며, 반드시 방문단 교환전에 빠른 시일내 송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 『포커스렌즈혼련』과 관련해서는 『노부모방문단 사업을 가로막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으로서 노부모방문단 사업과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고 하면서 『방문단을 제 날짜에 교환하기 위해서는 혼련계획을 무조건 취소하고, 그 사실을 내외에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또한 방문단 교환과 관련하여 아직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무절차문제와 관련하여 북측은,

- 노부모방문단에 『상대측 지역에서 인명피해·강도·절도 등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를 제외하는 문제, 기자의 취재원칙 설정문제, 공연포스터 시내부착문제는 『방문단 교환의 본래 취지에 비추어 필수불가결한 문제로서, 귀측도 이를 인정한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음.

○ 이러한 북측의 입장표명에 대해 우리측은,

- 『핵문제』는 북측의 주장대로 IAEA의 사찰결과 평화적인 핵정책이 입증된 것이 사실이라면 남북 상호사찰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 『이인모문제』는 이미 우리측 국무총리가 대북서한을 통해 인도주의·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한 만큼 북측이 이에 응하면 될 것이고,
- 『포커스렌즈훈련』은 연례적 도상훈련으로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 실무절차문제에 대해서는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의 양해각서와 85년도 고향방문단 교환시의 선례에 따라 할 것을 촉구했음.

나. 討議內容

- 북측은 실무절차문제 토의는 아예 외면한 채 『핵문제』, 『이인모문제』, 『포커스렌즈혼련문제』를 반복하여 거론하면서, 이들 3가지 문제가 방문단교환의 『전제조건』임을 누누히 강조하고 이같은 입장을 당국에 전달해줄 것을 요구했음.
- 북측은 『남측에서 합의서 이행과 관계개선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제조건을 걸었다』고 우리측에 책임을 전가
- 우리측은 북측에 방문단 교환과 무관한 문제를 계속 거론하지 말고 실무절차문제 토의에 들어갈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으나, 북측은 『그렇다면 우리측 제의를 다 받아들여야겠다는 거냐?』고 하면서 이에 응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음.
- 북측은 특히 방문단 교환일정과 관련하여 『문화방송』의 『10월 연기 불가피』 보도내용을 문제삼아 거론하면서 우

리측으로부터 『방문단 교환일자를 연기하자』는 발언을 유도해내려는 의도를 노골화 했음.

— 우리측이 문화방송의 보도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자 『문화방송 기자를 불러다 사실을 확인하자』, 『솔직히 말해라』는 등 우리측으로부터 연기제의를 유도하기 위해 집요하게 매달렸음.

— 우리측이 『합의된 날짜인 8월 25일에 방문단을 교환하자는 것이 우리측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거듭 확인하자 북측은 『그 사이 방침이 바뀌었나?』는 등 곤혹스러워하는 반응을 보이면서 『한쪽이 예정된 날짜에 못하겠다는데 억지로 할 수 있나?』고 하면서 연기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시했음.

○ 북측은 『핵문제』, 『이인모문제』, 『포커스텐즈혼련문제』 등 3가지 전제조건에 대해 『귀측 당국의 긍정적 답변이 오는대로 방문단 교환사업을 다그치자.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답을 달라』고 하면서 차기접촉을 8월 7일에 갖자고 제의했음.

— 이에 대해 우리측은 『차기 접촉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방문단 교환일자는 원래대로 하고 방문단 준비일정을 단축하든가 아니면 방문단 교환일자를 연기하게 될 경

우 그 구체적 일자를 이 자리에서 정하자』고 요구했으나 북측은 차기접촉에서 논의하자고 이를 미루었음.

3. 分析·評價

○ 금일 접촉에서 북측은 쌍방이 합의한 방문단 교환일자를 사실상 무기연기시키려는 태도를 보였음.

— 그동안 실무대표접촉 과정을 총결산하는 종결성 발언을 했으며,

— 포커스렌즈훈련은 노부모방문단 사업과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 차기 실무대표접촉 일자를 8월 7일로 제시했음.

※ 8월 25일 노부모방문단 교환이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하게 되었음.

— 문화방송의 『10월 연기 방침』 보도내용을 빌미로 우리측의 연기발언을 유도해보려는 태도로 일관했음.

— 방문단 교환일자를 연기할 경우 그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이를 회피했음.

○ 북측이 다음 접촉일자를 제시한 것도 접촉의 진전을 통해 합의서를 타결해보겠다는 의도라기 보다는 무기연기의 책임을 면하려는 형식적 대응인 것으로 보임.

- 3가지 전제조건에 대한 북측 입장이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며 『귀측 당국의 긍정적 태도표시가 있을 때까지 인내성있게 기다릴 것』이라고 언급
- 북측의 입장을 우리측 당국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오는 대로 해나가자고 주장함으로써 전제조건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음.

○ 북한측은 합의지연 및 방문단 교환사업의 연기책임을 우리측에 전가시키는데 주력하였음.

- 핵문제에 관한 우리측 당국자들의 발언을 트집잡아 이것이 우리측의 노부모방문단을 유산시키려는 의도를 실증한 것이라고 강변
- 특히 포커스텐즈훈련을 방문단 교환시기와 일치시킨 것은 노부모방문단 사업을 가로막는 계획적인 행동이라고 비난
- 방문단 교환의 성사여부는 그 장애요인(3가지 전제조건)에 대한 우리측 당국과 적십자사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고 언급

※ 이인모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측이 『명백히 어느 달을 찍어서 송환을 약속했다』며 『신의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

○ 금일 북측의 태도로 보아 북측은 우리측이 노부모방문단 교환사업에 매달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북측은 우리측이 핵문제와 『경제협력』을 직접 연계시키는데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 『경제협력까지 차단하는 것을 보면 노부모방문단 교환사업도 안겠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발언을 하는가 하면, 『포커스렌즈훈련보다 귀측 고위급회담 대변인의 핵관련 발언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
- 이로 볼 때 북측은 노부모방문단의 교환을 『카드』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보이며, 향후 분과위원회 회의 및 제 8차 남북고위급회담의 추이를 보아가며 노부모방문단 교환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임.

4. 次期接觸日字 및 場所

- 일 시 : 1992년 8월 7일(금) 10:00
- 장 소 :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

第8次 實務代表接觸 結果報告

1992. 8. 7

1. 一般事項

가. 일 시 : 1992년 8월 7일 (금) 10:00 - 12:40 (非公開)

나. 장 소 :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다. 참석자

<우리측> 李 柄 雄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李 俊 求 (대한적십자사 회담운영위원)
李 正 勇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사업 자문위원)

<북 측> 박 영 수 (북한적십자회 중앙위 상임위원)
김 광 수 (북한적십자회 중앙위 위원)
신 원 철 (북한적십자회 중앙위 책임지도원)

* 수행원

<우리측> 김광호, 한수웅, 임용훈, 정태진, 우영표

<북 측> 윤운홍, 홍설호

2. 接觸內容

가. 雙方 첫發言 要旨

- 우리측은 남북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구성을 위한 사전 명단의 교환예정일인 7월 26일을 무려 십여일이나 지난 시점에서 아직도 실무절차문제를 타결짓지 못하고 실무대표접촉을 계속하게 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 부당한 전제조건을 더이상 고집하지 말고 실무접촉대표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실무절차문제를 타결시키는데 늦게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음.
- 또한 실무절차문제와 관련하여 북측이 고수하고 있는 『노부모방문단에서 소위 범죄자 제외문제』, 『기자의 취재활동원칙 설정문제』, 『공연포스터의 시내부착문제』 등은
 - 사실상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교환의 근본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1985년 고향방문단 교환시의 전례와도 맞지 않는 것이며,
 - 이 문제들로 해서 실무절차문제의 타결에 장애를 조성하는 것 자체가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시의 양해각서에

『기타사항은 1985년 제1차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시의 선례에 따르기로 한 것』에 위배되는 것으로,

- 북측이 진정으로 남북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을 성사시킬 의사가 있다면 오늘 접촉에서 이 문제들을 깨끗이 해결하고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음.

○ 반면 북측은 첫발언에서 『핵문제』, 『이인모문제』 및 『포커스렌즈훈련문제』를 방문단 교환의 전제조건으로 계속 거론하였음.

-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측 외무부 당국자가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노부모방문단의 교환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는 연합통신의 보도내용을 들고 나와 『방문단 사업은 핵문제와 연계시키지 않겠다』고 한 말도 『빈말』이라고 주장했음.

- 『이인모송환문제』와 관련해서는 『귀측 당국이 천금보다 귀중한 약속을 어기고,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하면서, 『귀측 총리의 서한은 이를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새로운 구실을 만들어 이인모노인을 송환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음.

- 『포커스렌즈혼련』과 관련해서는 『도상혼련을 실동혼련으로 바꿈으로써 새로운 엄중한 난관을 조성한 것』이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문단 교환을 유산시키려는 도발』이라고 주장했음.

○ 또한 실무절차문제와 관련하여 북측은,

- 우리측이 『노부모방문단 구성인원 수를 241 명으로 한 것』, 『노부모방문단 사전명단 교환시 인원수를 200 명으로 한 것』, 『방문지역을 서울, 평양의 인근지역까지 확대시킨 것』은 『쌍방 당국간의 합의를 무시하고, 방문단교환사업을 지연 또는 무산시키려는 의도였다』고 비난했음.
- 반면 북측이 계속 고집하고 있는 소위 『방문단 구성에서 범죄자 제외문제』, 기자의 『취재활동 원칙설정문제』 등에 대해서는 『방문단 교환의 목적상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음.

나. 討議內容

○ 우리측은 북측의 기본발언 내용에 대해

- 『귀측이 내놓은 전제조건이 과연 본 적십자 실무대표

접촉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들 문제가 적십자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반문하고,

— 『그러한 문제들은 당국간에 해결하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방문단 교환의 실무절차문제만을 토의하자』고 촉구했음.

○ 이에 대해 북측은 『실무절차문제를 토의하기 전에 전제조건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고집하고, 이를 계속 거론하면서 『당국이 질러놓은 빗장을 뽑아버리는데 귀측은 응당한 책임과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음.

○ 북측이 방문단 교환 실무절차문제의 토의를 거부하고, 전제조건만을 거론함으로써 방문단 교환을 무산시키려는 태도가 명백해지자 우리측은 『종결발언』을 통해

— 『실무절차문제의 타결은 커녕 토의조차도 외면하면서 오로지 전제조건만을 고집하는 정치선전적 발언으로 일관하는 귀측의 태도는 방문단 교환을 끝내 무산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사표시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 소위 3가지 전제조건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을 재강조한 뒤,

- 북측이 전제조건을 계속 고집하여 방문단 교환을 끝내 무산시킬 경우, 이는 남북 쌍방 당국간의 합의사항을 파기하는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 북측이 한시바삐 적십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방문단 교환사업에 유종의 미를 거두어 남북화해와 단합에 기여할 것을 촉구하였음.
- 차기접촉문제와 관련하여 북측은 8월 26일에 제9차접촉을 갖자고 제의했으며, 이에 대해 우리측은 『방문단 교환을 8월 25일- 8월 28일 사이에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을 그대로 둔채 8월 26일을 접촉날짜로 잡는 것은 맞지 않으니 방문단 교환 연기날짜를 먼저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북측은 『방문단 교환날짜를 미리 합의한 것이 잘못된 것이며, 실무접촉이 결속되는 날짜가 명단교환 날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음.
- 이에대해 우리측은 『전제조건만을 계속 주장하는 접촉은 더이상 할 필요가 없으며, 다음 접촉에서는 전제조건을 철회하겠다면 접촉날짜를 잡을 수 있다』고 하자 북측은 이를 거부, 우리측은 『그렇다면 전제조건을 철회할 때 직통전화를 통해 연락하라』고 한 뒤 접촉을 끝마쳤음.

3. 分析·評價

- 0 금일 접촉에서 북측은 방문단 교환을 사실상 무산시키려는 태도를 명백히 하였음.
- 북측은 기본발언에서부터 그간의 실무대표접촉 과정을 총결산하고 『전제조건』에 대한 정당성을 강변하는 종결성 발언을 했으며,
 - 소위 세가지 『전제조건』에 대한 우리측 당국의 응당한 조치를 요구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만이 방문단 교환사업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였음.
 - 또한 종결발언을 통해서도 『세가지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한 불행하게도 방문단 교환의 유산은 불을 보듯 명백』하며, 『방문단 교환의 성사 여부는 그 장애물인 빗장을 뿔는데 있다』고 주장하였음.
 - 방문단 교환을 연기하겠다면 그 구체적 날짜를 제시하라는 우리측 요구에 대해 『실무접촉이 결속되는 날이 명단교환 날짜이며, 방문단 교환날짜를 미리 정할 필요가 없다』고 회피적 태도를 취했음.

○ 노부모방문단 교환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이인모의 송환이 절대적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시사했음.

- 우리측 회담대표들이 이인모를 아무런 조건없이, 시기도 찍어서 『송환하겠다』는 것을 명백히 통보했기 때문에 노부모방문단 교환을 제의했던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였음.
- 우리측 국무총리의 서한에 대해 『방문단 교환이 유산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인모를 송환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이인모 송환문제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음.
- 『이인모노인의 송환없이도 노부모방문단 교환을 실현시킬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 입장』이라고 강조함으로써 방문단 교환을 이인모 송환실현의 불모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음.

○ 북측은 금번 접촉에서 방문단 교환의 무산책임을 전가시키는 데 시종일관 주력하였음.

- 북측은 그간의 실무대표접촉 과정을 종합평가하면서, 우리측이 오히려 방문단 교환에 전제조건을 걸고 『빚장을 채워놓고 있다』고 사실을 전도시키려고 애썼음.

-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교환의 무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면서도 차기접촉을 8 월 26일에 갖자고 제의한 것도 그 무산책임을 우리측에 전가시키기 위한 계산에서 나온 것임.

「南北離散家族 老父母訪問團 吳 藝術團」交換關聯
南北赤十字 實務代表接觸 結果報告(綜合)

發 行 日：1993年 8月 11日

發 行 處：統一院 南北會談事務局

印 刷 所：輝文印刷(株)

| | |
|----------------|---------------------------|
| 도 서 명 | 남북정심자 실무대조접촉 결과보고 (종합) |
| 저 자 | |
| 출 판 사 | 통 일 원 |
| 출판년도 | 1993. 8 |
| 분류항목 (분류코드) | 3200-2 |
| 비 고 | |